

영동 리움 이든팰리스 입주자모집공고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11항”의 규정에 의거)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 순위별 청약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년 4월 1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 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청약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 (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하여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적용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은 「주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본 주택은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해당되는 자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와 인접한 충청북도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 10조 제3항 제5호에 의거 공급신청자 중 같은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영동군) 거주자가 우선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및 그 세대가 속하는 자 중 최저층을 희망하는 당첨자에게 최저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영동군 도시건축과 - 20999호(2015.05.18)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 충청북도 영동읍 동정리 93번지 외 2필지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1층, 지상10~20층, 1개동, 14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45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비고
			공급면적			기타공용 (지하주차장포함)	계약면적		계	일반 특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주거전용	주거공용	계						다자녀 가 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 양	소 계		
민간건설 중형국민	2015000459-01	67.3279	67.3279	25.2216	92.5495	15.1540	107.7035	36.9881	40	4	4	4	1	13	27	
	2015000459-02	84.9041A	84.9041	25.5715	110.4756	19.1101	129.5857	46.6439	88	9	9	9	2	29	59	
	2015000459-03	84.9656B	84.9656	45.2863	130.2519	19.1238	149.3757	46.6777	13	1	1	1		3	10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음(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과 세대별 외벽면적,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과 세대별 외벽면적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 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 시 또는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으로 인해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

(단위: m², 원)

구분	주택형 (m ²)	공급세대수	기준	세대별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10%)	20%(2015.08.31.)	(70%)입주지정일
민간건설 중형국민	67형	40	1층	17,015,000	139,985,000	157,000,000	15,700,000	31,400,000	109,900,000
			2층	17,015,000	149,985,000	167,000,000	16,700,000	33,400,000	116,900,000
			3층	17,015,000	154,985,000	172,000,000	17,200,000	34,400,000	120,400,000
			4층	17,015,000	158,985,000	176,000,000	17,600,000	35,200,000	123,200,000
			5-20층	17,015,000	161,985,000	179,000,000	17,900,000	35,800,000	125,300,000
	84A형	88	1층	21,457,000	165,543,000	187,000,000	18,700,000	37,400,000	130,900,000
			2층	21,457,000	175,543,000	197,000,000	19,700,000	39,400,000	137,900,000
			3층	21,457,000	180,543,000	202,000,000	20,200,000	40,400,000	141,400,000
			4층	21,457,000	185,543,000	207,000,000	20,700,000	41,400,000	144,900,000
			5-20층	21,457,000	189,543,000	211,000,000	21,100,000	42,200,000	147,700,000
	84B형	13	2층	21,473,000	190,527,000	212,000,000	21,200,000	42,400,000	148,400,000
			3층	21,473,000	196,527,000	218,000,000	21,800,000	43,600,000	152,600,000
			4층	21,473,000	201,527,000	223,000,000	22,300,000	44,600,000	156,100,000
5-14층			21,473,000	205,027,000	226,500,000	22,650,000	45,300,000	158,550,000	

- 상기 공급금액은 당사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조망별 등으로 적의(適宜)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2007년 9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으로 청약가점제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으며, 본 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 85m²이하로서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분양금액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함.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나머지 금액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 함)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능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임.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함.
-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당첨자로 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당사가 정한 기간 이내에 고의성 없이 신청자격을 착오로 잘못 입력(기재)하였음을 소명할 경우 당사에서 판단하여 금융결제원에 당첨자 제외 요청을 할 수 있음)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접수 받아 호수를 추첨하며, 추첨 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구분됨.
- 상기 세대별 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면적과 대지면적의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 특별공급 공통사항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제6항, 제7항, 제13항에 해당되는 일반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포함)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0%, 신혼부부 특별공급 10%,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3% 범위 내에서 공급되며, 당사 건본주택에서 직접 청약 접수를 받고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 ① 청약예금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납입인정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신청 전에 가입은행

및 APT2YOU 홈페이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면적을 해당면적으로 선택하여야 함)

④ 청약저축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월납입금을 연체없이 6회이상 납입한 1순위자.

- 입주자저축 가입요건에서 제외되는 자
 - 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 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10년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75조 제2항의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한 1순위자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봄.
- 특별공급 당첨자와 그 세대원은 일반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당첨 시 특별공급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분은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특별공급에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서약서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금융결제원, 국토교통부 등의 주택소유 전산검색을 통하여 주택소유자로 판명되거나,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환불하며, 당첨 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받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취소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일반(10%)	다자녀가구(10%)	신혼부부(10%)	노부모부양(3%)	합 계
67	4	4	4	1	13
84A	9	9	9	2	29
84B	1	1	1		3
합 계	14	14	14	3	45

※ 주택형별 특별공급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음.

◎ 특별공급 신청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 청 접 수		당첨자 선정		동 호 수 추 첨
	일 자	장 소	일 자	장 소	

일 다 신 노 반 자 혼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부	2015.05.26(화) (10:00~15:00)	당 사 견본주택	2015.05.26.(화) (16:00)	당 사 견본주택	*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일정 참조 * 동·호수 배정 추첨은 일반공급과 일괄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배정 추첨함.
---	--------------------------------	-------------	---------------------------	-------------	--

1) 일반 특별공급

● 일반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 등 해당 기관(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등)에서 인증을 받은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입니다.

● 일반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저축 가입요건 해당자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www.ap2you.com에서 발급)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2항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서(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확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 1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무주택 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입니다.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이어야 함.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2012.5.15)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자에 대하여 배점을 부여함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우선순위 배점표” 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65			
미성년 자녀수 (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 (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 세대주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세대주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세대주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 (5)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에서 발급)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당사 견본주택 또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음)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 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의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편부, 편모, 미혼모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또는 모부자가정증명서(읍/면 동사무소)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3자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

-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자녀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3)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일 기준, 재혼포함)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확인)이거나 출산(출생신고일 기준) 또는 입양(입양신고일 기준)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재혼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 출산,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됨)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사업주체는 임신부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입양부부 당첨자를 대상으로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임신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요구)
- 입주예정자가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전 파양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이하하여야 합니다.

※ 201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통계청 고시)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4,734,603원 이하	5,224,645원 이하	5,560,026원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5,681,524원 이하	6,269,574원 이하	6,672,103원 이하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00%를 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19세 이상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19세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㉑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한다)하여 자녀가 있는 자
- 동일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
 -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포함) 수가 많은 자
 - ③ 미성년인 자녀(태아포함)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하여 산정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분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에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단,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1통 (단,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정구) • 임신진단서 (임신중인 경우에 한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발행분)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소득입증 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①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③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무직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해당직장 * 접수장소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4)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3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충청북도에 거주하면서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

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동일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가 충청북도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시의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를 따릅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p>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당사 건본주택에 비치) • 청약통장 가입(순위) 확인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2you.com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제외)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p>※ 청약접수시 무주택서약서 작성으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며, 당첨자의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다음의 무주택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p> <p>-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p>
<p>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사항</p>	<p>※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기재)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당사 분양사무실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과 도장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상기 제증명 서류 중 주민등록 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일반공급

■ 공통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 현재 영동군 및 충청북도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

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단, 동일순위 내 경쟁이 있을시 주택건설지역인 영동군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음)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관리하며, 재사용이 불가함.
- 부적격 당첨자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3개월 청약이 제한됨.**
- 영동군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 가입 후 영동군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람.

1) 순위별 신청자격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간 건설 중형 국민 주택	1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적용(가점제 40%, 추첨제 60%)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3)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경과하고, 납입인정 회차가 6회 이상인 1순위자.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추첨제

•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제4항 관련)

구분	서울/부산	기타광역시	기타시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약접수 일정 및 장소

구 분	순 위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국민주택	1순위	영동군 및 충청북도	2015. 05. 27 (수요일)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2you.com)	· 일시 : 2015. 06. 03 (수요일) · 장소 : 당사 건본주택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 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	영동군 및 충청북도	2015. 05. 28 (목요일)	· 접수장소 : 인터넷(08:00~17:30)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계좌보유자 (www.kbstar.com) - 국민은행 외 청약신청금 계좌보유자 (www.ap2you.com)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기준으로 거래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시 인터넷 또는 은행창구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게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장애인 등 창구 청약 가능시간 : 해당 청약 신청일 09:00~16:00, 단,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하며 2순위 접수는 청약자의 거래은행 창구에서 가능]
- 2009.4.1부터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주택청약 업무시간이 08:00~17:30으로 변경됨.

2) 청약관련 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최초 청약 전까지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를 선택하여 정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①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
 - ②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이종당첨 처리기준 : 동일계좌로 2주택이상 청약한 경우 모집공고상의 당첨자 발표일자가 가장 빠른 주택을 당첨주택으로 하고, 후 당첨 주택은 당첨을 취소함.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신청접수방법

1. 특별공급 (일반 특별공급/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2. 공통

- 층별·동별·호별·향별 구분 없이 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3. 1순위 : 1순위 청약자 전원은 가점제로 청약접수 되며,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함

4.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함

5. 청약신청 접수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취소 세대는 예비 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함.

■ 가점제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1. 청약가점제 관련 유의사항

-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1순위)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일정비율로 배분된 가점제 및 추첨제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 항목 및 점수 :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 하여야 함.

2. 가점점수 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 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 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 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3. 가점 항목별 적용기준

구 분	신 청 자 격
<p style="text-align: center;">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중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p style="text-align: center;">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본다.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 style="text-align: center;">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4.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4)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5)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6)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 ③ 소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인터넷 신청접수 방법

구 분	국민은행 (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1)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2) 2순위 : 주택청약 참가은행 계좌 개설자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2you.com) 에 접속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1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2순위 :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비치) · 청약예금 또는 부금통장(1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증명서1통)[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2순위 신청자에 한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2순위 청약신청금 : 금융결제원(www.ap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 혹은 청약자의 거래은행 본·지점 창구 신청접수

주택형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주택형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 참가은행에 계좌개설후 2순위 청약금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여하시기 바람. (인터넷 청약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창구청약시 가능한 영동군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2015. 06. 04.(목)] 이후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장소 : 청약신청시 청약자가 지정한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자동 이체됨. 환불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
- 환불시 구비사항
 - 본인·배우자 환불시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 상기 구비서류 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청약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위임장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정방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건본주택에서 당첨자만 선정(당첨자를 추첨으로 선정할 경우 신청자 또는 일반인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함)후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하여 동·호수를 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가점제, 60%를 추첨제 신청자에게 공급하며,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 함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일반공급 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2순위까지 전체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미계약 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동·호수를 최초로 배정 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건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예비당첨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건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정당당첨자의 계약체결 기간 이후 발생한 미계약 세대 및 계약취소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인터넷, ARS, 휴대폰 문자 당첨자 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인터넷	이용방법	국민은행홈페이지 (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금융결제원홈페이지 (www.ap2you.com) 에 접속 → 당첨사실조회
	이용기간	2015. 06. 03 ~ 2015. 06. 12(10일간)	
ARS	이용방법	국민은행콜센터(1588-9999) [서비스코드: 9→1→3]	전자금융공동망(1369) [서비스코드:5#]
	이용기간	2015. 05. 03 ~ 2015. 06. 12(10일간)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5. 06. 03(수) 09: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당첨자 : 2015. 06 08(월) ~ 2015. 06. 10(수) (3일간, 시간 09:30~16:0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장소 : 당사 분양사무실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함.
- 일반공급 당첨자는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계약기간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한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정당한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분양대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2-729567	대한주택보증(주) 대전충청지사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 되지 않음.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비사항
정당 당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자 중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계약자의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초본 1통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직계비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신고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 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가옥대장 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 계약 위임용)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견본주택에 비치)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5.05.2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간 동일주택 중복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당첨자 모두 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음(2009.4.1 재당첨 제한 완화조치에 의거).
- 본 아파트는 공정을 80% 이후에 분양되는 후분양 아파트로서 건분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최종 사용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부대시설 :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MDF실, 방재센터, 경비실

■ 복리시설 : 주민공동시설(헬스장), 게스트하우스

■ 중도금, 잔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응자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 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음.
- 상기 주택은 67㎡형은 60,800,000원 84㎡A형, 84㎡B형은 80,000,000원의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어 중도금 및 잔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입주일(입주예정일 이후 입주시는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대환전일까지 기간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응자이자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위 표시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액은 입주시 분양대금의 잔금으로 대체되므로 고객님의께서 납부해야 할 금액은 총공급금액에서 국민주택기금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국민주택기금의 잔금대출을 원하지 않는 분은 기금대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우리은행 명의의 잔금수납계좌(우리은행 서수원지점 계좌 1005-602-731181, 전화번호 031-296-3811)로 입금하여야 하며, 업체앞 직접 현금납부 또는 잔금수납계좌이외의 타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반드시 은행에 확인요망)

■ 입주자 사전방문

-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확인사항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가구공사 · 타일공사 ·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
- 충청북도 조례 제3295호 규정에 따라 아파트 품질검수 실시예정

■ 입주예정월 : 2015년 12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m², 원, VAT포함)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67	84A	84B	비 고
발코니 확장공사비	8,000,000	8,500,000	9,000,000	

- 본 아파트는 공정을 80% 이후의 후분양아파트로서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하며, “을”은 “갑”에게 발코니확장에 따른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시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되며, “을”은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니,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을” 또는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을”은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 공급신청서의 내용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m²)]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환산방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3.3058]
- 2009. 4.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건축물의 외관 및 외부마감, 야간조명, 옥상 및 외부구조물, 부대복리시설 평면 등은 경미한 변경 및 마감 등을 통하여 변경·수정될 수 있음.
- 주택건설기준에 의거 방음벽 및 수립대등의 방음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저층부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야 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후(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 받는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세대당 분양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 보관)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계약자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 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 이사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불편을 야기 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 및 외부디자인계획 등은 영동군과 인허가청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청약 및 계약전 본 아파트 사업계획승인내용과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된 민원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카다로그, 팸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상황 또는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분양 및 계약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구획선, 색채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인쇄 제작상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미 전시된 자재의 경우 계약 전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평형과 다른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다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은 관할관청의 이미지개발에 따른 고유 마을명칭 및 색채계획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 부담이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항공장애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부분적 사생활 침해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급배기구는 소음, 진동, 공해 및 미관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기타 내부에 세대 분전반, 세대 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영동역 및 경부선 선로와 인접해 있어 소음발생 및 야간조명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자동차공업사, 중기수리소와 인접해 있어 소음발생 및 야간조명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기타 기기 및 비품은 입주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함.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주민공동시설에 대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층별 공급금액의 상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승인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공정을 80% 이후의 후분양아파트로서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만 공급합니다. 따라서 발코니확장에 따른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되는 기준내에서 확장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을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흡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우천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발코니 샷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물쓰는 공간으로 설계된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흡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 및 덕트는 노출(천정, 벽)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지 진출입을 위한 교통시설물의 배치 등에 대하여는 영동군 교통과의 협의에 의하여 도로선형 및 차선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외 도로, 차량 진출입구, 비상차로, 보행자 출입구, 부대 복리시설 등의 인접 세대는 차량, 보행자 등에 의하여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차량전조등 및 야간조명 효과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적용되는 마감재의 색상 및 제품은 필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 시공시 제품에 따라 무늬, 색상, vein(석재) 등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설물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계획 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조경, 동현관, 지하출입구, 지하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선큰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 주변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모형 및 각종 홍보물, 홈페이지 등의 단지 조경 및 배치도는 추후 실시공과 차이가 있음.
- 세대내 창호의 개폐방향과 설치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지붕층과 부대시설 난간형태 및 설치위치는 안전성과 입면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주동 옥상구조물과 입면 디자인은 외부 차별화 설계에 의하여 추후 재료 및 입면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음
- 옥상에 공청방송 및 위성방송 수신을 위한 안테나가 설치 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위치는 변경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1층에는 관리사무소, 게스트하우스, 주민공동시설(헬스장),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세대 내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법정공간이 아닌 추가로 설치된 피난공간으로 실외기 설치공간과 전열교환환기유니트, 수전, 가스배관 및 가스메타기, 완강기(2층~10층세대)등이 설치 됨.
- 단지 배치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실, 정화조 연동 시설과 인접하는 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쓰레기 수거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불편을 야기 할 수 있음
- 아파트 외벽에는 전열교환기 급배기구와 보일러 연도가 설치 됨
- 가스 사용시설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에 따라 빌트인 가스렌지와 호스 연결부 부근 주방 상판에 호스 단면적 이상의 점검구가 설치 됨.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외국환 유입에 따른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 ③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 견본주택 및 카달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67.3279	84.9041A	84.9656B	비 고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67	84A	84B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고기밀 창호	적용	KS F2292 기준 1등급이상 제품사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KS 기준효율 1.12배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복리시설 화장실 내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 각실
절수설비	적용	단위세대 내 절수형기기로 설치

■ 벽체 및 창호의 단열성능

구 분	구 성 내 용	열관류율[W/m²K]
측 벽	열관류율계산서 참조	0.28
외벽(직접면함)	열관류율계산서 참조	0.32
외벽(간접면함)	열관류율계산서 참조	0.47
창호(직접면함)	22mm복층유리+22mm복층유리(사중창)	1.5
현관문	단열두께 20MM이상	1.8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VAT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 통신, 소방 감리
회사명	(주)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상우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24,572,049	75,0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 호	(주)리움, (주)리움토건	(주)리움토건
주 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들로 5-1, 청주시 서원구 남들로 5-1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들로 5-1
법인등록번호	150111-0181680, 144511-0001507	144511-0001507

■ 본 주택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내용

보증서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6712015-101-0001000	8,504,40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1조제4호)

“보증사고”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3조)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대한주택보증(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건본주택 홈페이지 : <http://rium.kr>

건본주택 위치 :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38 일원

분양문의 : ☎(043) 234-1122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건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